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9. 이흥민 의원 외 7인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9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흥민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청소년, 노동인권 등을 정의함(안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3)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함(안 제4조 ~ 제5조)
- 4)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- 5) 민간협의체 구성·운영을 규정함(안 제8조)
- 6)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등을 규정함(안 제9조 ~ 제10조)
- 7)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을 규정함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2019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‘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·고교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7.8%가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체불 문제가 57%,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키는 행위가 21.2%이고,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17.9%에 달하는 등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.
-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무려 61.7%의 학생이 그냥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부당한 노동에 대한 대항을 못하고 주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.
또한,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근로환경 합동 점검 결과에서도 아르바이트생 52.1%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.
-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닐 것이나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약자로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나타내고 있는 바, 동 조례안은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’토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에도 부합하는 것임.

《 청소년 기본법 》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교육 및 홍보 등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.>

- 조례안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,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담았고, 제3조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음.
- 제4조에는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률,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였고,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신체적,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- 제6조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, 특히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바,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,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, 노동 3권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음.
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음.

《 참고 자료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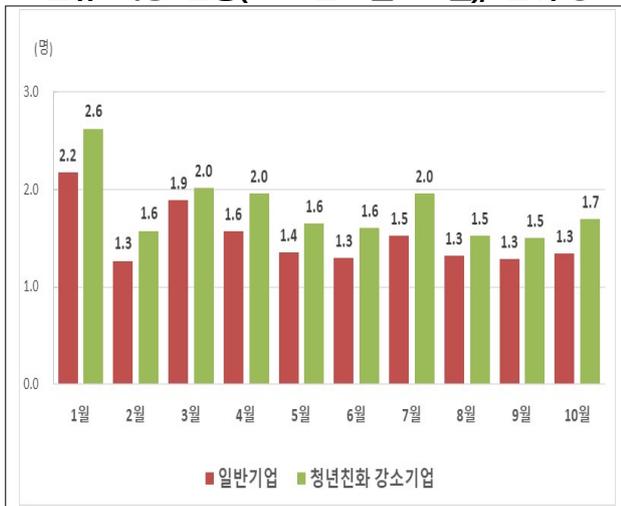
경남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청소년 대상 여론 조사 시 노동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학생의 80%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,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 주관 토론회에서는 교육대상으로 중학생을 포함하고, 취업 준비생 등 ‘경계에 있는 청소년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.

- 제7조~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, 제9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또한, 제11조에서는 관내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·홍보할 수 있게 하여 이 조례안의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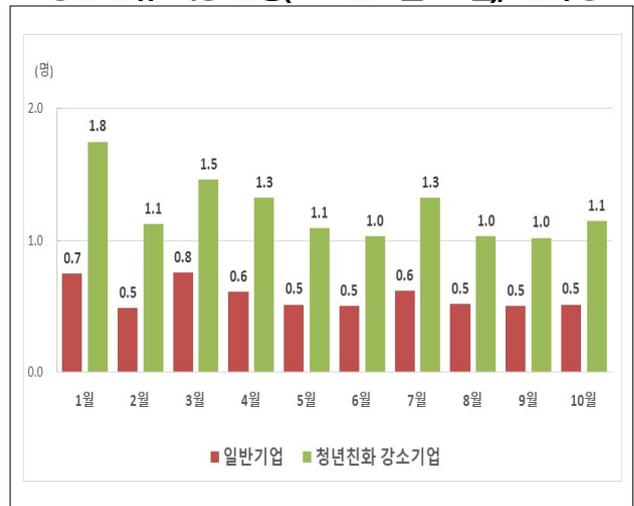
참고로, 고용노동부에서는 ‘임금 분야’, ‘일·생활 균형 분야’, ‘고용 안정 분야’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체를 <청년 친화 강소기업> 으로 선정하고 있으며,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, 금융 우대, 방송 광고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, 이들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청년을 6.5명 더 채용해 청년 고용 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※ [표 1] 참고

[표 1] -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(2019.12.20.)

<신규 채용 현황(2019년 1월~10월, 단위:명)>



<청년 신규 채용 현황(2019년 1월~10월, 단위:명)>



○ 우리 구에서도 <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> 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채용 박람회 우선 초청, 내고장 마포 등 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기업 홍보 등의 지원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